

特許情報에서의 優先權

成 基 泰

〈KORSTIC 特許情報部〉

1. 머리말

1624년에 영국에서 특허법을 제정한 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특허제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하거니와 우리나라는 20世紀初에 특허제도의 실시를 보게 되어 불과 70년의 歷史밖에는 없다. 近代的인 특허제도로 進一步한 것은 1474년 베니스共和國의 특허제도라고 하며 유명한 天文學者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는 揚水方法에 대하여 1594년 베니스共和國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 日淺한 우리나라의 특허歷史 속에서 大韓帝國 特許第一號로서 發明特許로 許與된 것이 鄭寅琥氏의 「말총모자」이다. 1908년에 公布되어 말총모자 등의 특허를 탄생시킨 특허제도도 1910년의 韓日合併으로 中止되고 日本의 特許制度로 말미암아 解放될 때까지 韓國特許制度의 암흑기가 계속되었다. 물론 1500年頃에 特許된 發明第一號의 「揚水方法」과 1900年頃의 韓國의 「말총모자」 사이에는 東西間의 差異라기 보다는 發明의 高度性의 差異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特許制度와 發明水準도 70年前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長足の 發展을 하였고 政府에서는 民間企業의 發明을 獎勵키 위하여 各企業에 特許專擔部署를 設置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특히 工業所有權關係의 國際機構에 積極 參與코자 1978년에 WIPO에 加入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年代에 파리條約에 加盟키 위해 工業所有權法도 改正할 계획

이라 한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飛躍的인 發展과 80年代 파리同盟條約의 加盟에 앞서 파리條約의 根幹을 이루는 內容中の 하나인 優先權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取扱해 보려고 한다.

흔히 우리가 어미한 特許情報를 대할 때 優先權이란 單語 특히 複合優先, 一部優先, 最初優先權日, 그리고 最後優先權日이란 낱말을 보게 된다. 優先權이란 法律上的 權利이며, 파리同盟條約 內容中の 하나이기 때문에 法律用語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使用해야 되겠고 條約을 어느 정도는 접해 보는 것이 優先權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리同盟條約과 優先權에 대하여, 優先權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優先權主張의 節次와 效果, 複合優先 등의 順序대로 記述코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파리條約 및 特許法條文을 그대로 引用한다. 그리고 이 優先權主張에 대하여 本誌 Vol. 12, No. 1을 參考하였으면 한다.

2. 파리同盟條約과 優先權

優先權은 條約內容中の 하나이므로 먼저 파리條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파리條約의 發生은 萬國博覽會에서부터 緣由하고 있다고 한다. 즉 1873년 비인에서 열린 萬國博覽會때 參加諸國은 特許製品을 出品하는 경우 오스트리아政府가 얼마만큼 法的保護를 해 줄까 하는 強한 危懼心을 가지고 參加하였는데 이것

이 바로 파리條約成立의 契機가 되었다고 하며, 後에 오스트리아政府는 出品된 特許品의 保護에 관한 特別法을 制定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비인會議 이후 100年後인 1883년에 다음과 같은 內容의 파리條約을 체결하였다.

2.1 内外人平等의 原則

(同盟國의 國民에 대한 内國民待遇)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的 保護規制를 目的으로 하여 締結된 파리條約은 同盟國民인 外國人에게 파리條約上의 權利를 保障하는데 있어 內國民(nationals)에 부과되는 條件 및 節次를 遵守하면 內國民과 同一의 待遇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内外人平等의 原則(assimilation with nationals)을 採用하고 있다. 또한 파리條約에 의한 保護를 받을 수 있는 者는 同盟國의 國民以外에 同盟國의 國民에 準하는 者(準同盟國國民)도 포함된다. 準同盟國國民이란 同盟에 속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國民으로서 同盟國의 領域內에 住所나 工業上 또는 商業上의 營業所를 가진 者를 말한다(條約第3條). 따라서 例를 들면 日本도 美國도 함께 同盟國이므로 日本國民은 美國에서 美國國民과 同一條件으로 特許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美國國民도 日本國民과 똑같은 條件으로 日本에서 特許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條約의 加盟國民(例를 들면 日本)은 非加盟國(例를 들면 韓國)에서는 特許를 받을 수가 없으나 하면 꼭 그렇지 않는다. 즉 平等主義를 取하는 國家와 어떤 同盟國인 A國 사이에서 그 國家의 國民에 대하여 權利의 享有를 認定한다면 그 國家도 A國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同一條件으로 權利의 享有를 認定한다고 하는 相互主義에 의한 協定이 있는 나라들에는 可能하다.

우리나라 特許法도 第40條에서 外國人의 權利能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相互主義를 取하고 있다. 「外國人으로서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는 者는 特許에 관한 權利를 享有할 수 없다. 다만 條約, 協定 또는 法律에 의하여 우리 國民에게 自國에 住所 또는 營業所의 有無에 不拘하고 權利를 許容하는 國家에 대하여는 例外로 한

다.」 原則적으로 住所 등을 갖지 않는 外國人은 特許에 관한 權利能力을 認定하지 아니한다는 不平等主義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도 없는 外國人에게 特許權과 같은 獨占權이 附與된다면 國民의 經濟的 活動을 萎縮시키고 國家의 産業發達에 沮害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반면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있는 外國人은 內國人과 같이 國內産業에 貢獻하는 것이라고 보아 特許法上의 權利能力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는 外國人이라도 條約, 協定 또는 自國의 法律이 우리 國民에 대하여 自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어도 權利를 許容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權利를 認定한다는 相互主義를 宣明함으로써 不平等主義를 緩和하고 있다. 現在 條約, 協定 또는 互惠主義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工業所有權에 관한 修交國은 40個國이다. 그리고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거나 또는 行政廳이 한 處分에 不服하여 訴를 提起할 수 없다. 이때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를 가진 代理人을 在外者의 特許管理人(patent administrator)이라 한다(特許法 第22條). 그러나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는 者도 그 者가 國內에 滞在할 경우에는 在外者의 特許管理人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다(施行令 第3條).

2.2 優先權

工業所有權制度가 世界의 여러나라에 普及됨에 따라 國際的인 規制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 最大의 目標은 外國出願을 할 경우의 優先權의 문제였다. 즉 自國에 特許出願을 하고 그 후 어느 期間에 있어서 外國에 出願을 하는 경우 그 사이에 新規性을 喪失하고 또는 後願으로 拒絕될 수가 있다. 이 不合理的 點을 回避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에 記述하려 하는 優先權制度이다. 파리條約締結의 契機로 된 가장 큰 原動力이며 이미 1883년의 條約때부터 第四條에 規定되어 있다. 發明의 新規性 또는 先願은 大多數 國家의 制度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特許要件中的 하나이다.

2.3 特許獨立의 原則(一國一特許의 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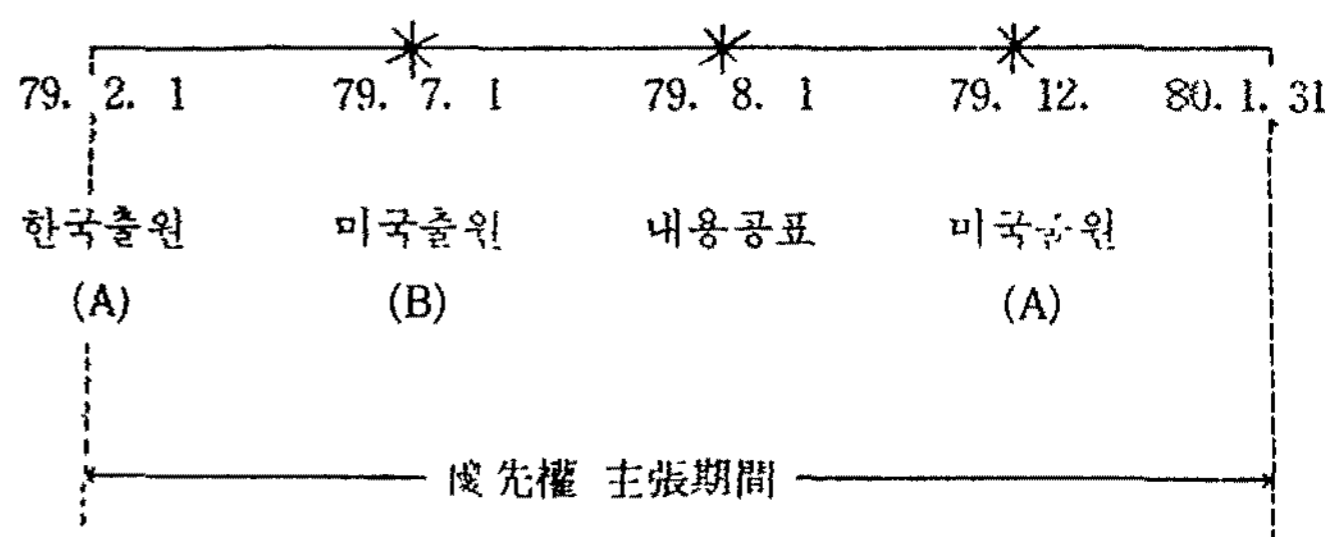
一國에 附與된 特許權은 그 國家의 領域內에 서만 効力을 가지며 領域外에는 效果를 미치지 않는다. 고로 同一의 發明에 대하여 同一의 사람이 二個國以上에서 特許權을 받더라도 이러한 權利는 別個로 存在하며 그 사이에는 어떠한 關係도 없다. 特許獨立의 原則(principle of the mutual independence of patents)이 適用되는 結果 同一發明에 대하여 二以上の 國家에 있어서 二以上の 特許權이 附與된 경우, 例를 들면 一國에서 取得한 特許權에 대하여 無効, 失權 등의 事實이 發生하는 일이 있더라도 他國의 特許權의 効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3. 優先權이란 어떠한 權利인가

優先權(Priority right)이란 同盟國의 어느 一國에 正規로 출원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이 最初에 한 國家의 出願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에 다른 同盟國에 出願을 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特別한 利益을 말한다. 特別한 利益이란 後의 出願 즉 第二國 出願이 先後願의 關係 및 新規性의 判斷에 있어서 最初의 出願 즉 第一國의 出願때에 한 것과 똑같은 取扱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優先權에 관한 規定은 內外人平等의 原則과 함께 파리條約에서 가장 중요한 根幹을 이루고 있다. 파리條約은 工業所有權(대개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를 말함)의 保護에 있어서 相互條約國의 內外人을 區別하지 않고 平等히 待遇한다는 國際的인 規定이나 各國에는 自國 나름의 屬地主義的인 工業所有權이 存在하고 있다. 그래서 同盟(Union) 中의 一國에 한 出願은 그 出願國家에 限定되므로 다른 第三國家에 대해서는 効力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同盟國에서의 保護를 얻고자 하면 各國마다 出願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出願은 先願의 地位確保와 新規性의 保持를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出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多數의 國家에 出願하는 것은 費用이나 勞力의 면에서 볼 때 出願人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不便한 점들을 國際協力에 의하여 解消코자 파리同盟條約會議에서 만든 것이 이 優先權 制度이다.

優先權에 대한 例로서 어떤 한국사람(A)이 79년 2월 1일에 한국에 特許出願을 하고 年末이 되어 다시 美國에도 出願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7월 1일에 他人(B)이 美國에 同一한 發明을 出願하였거나 또는 本人이 8월 1일에 學術雜誌 등에 內容을 발표하였다고 하면 年末에 美國에 出願을 하여도 이미 他人의 出願이 있다든가(先願) 또는 學術雜誌에 公知되어 있다고 하여(新規性의 喪失) 拒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優先權의 規定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12개월이내에 優先權의 主張(Claim of Convention Priority)을 수반하는 出願을 美國에 하게 되면 이러한 不利益한 사실은 받지 않게 된다. 이 規定이 만들어진 것은 地理的인 문제와 言語 및 制度上의 相違때문에 本國에 出願하고 동시에 諸外國에 出願하는 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4. 優先權의 主張

4.1 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는 者

優先權을 主張할 수 있는 者는 同盟國에서 正規로 特許出願을 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이다. 正規의 國內出願이란 그 結果를 불문하고(第二國 出願前에 第一國에서 取下, 拋棄 또는 拒絕되더라도) 當該國에 出願을 한 날짜를 確定하는 데에 充分한 모든 出願을 말한다. 그리고 原出願은 同盟國의 一國에서 正規로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出願人의 本國에서 될 필요는 없다. 例를 들면 프랑스국민이 독일에 최초로 特許出願을 하고 그후 프랑스에 特許出願을 한 경우 독일에서의 最初優先出願을 이유로 하여 프랑스

에서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위의 事例는 判例나 立法에 의하여 허락되며 독일에서는 特許廳의 判斷으로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도 위의 國家들과 같이 積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特許審査便覽15.03A) 우리나라도 積極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特許法 第42條에 明文規定은 없으나 大韓民國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國家에 대한민국國民이 특허출원을 한 후 同一發明을 第42條의 規定에 따라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優先權의 利益을 받고자 할 때에는 허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韓國國民보다도 外國人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條理上 不合理的하기 때문이다.

4.2 우리나라 國民과 優先權

우리나라는 파리同盟條約에 加盟되어 있지 않으므로 加盟國民과 같은 自由로운 優先權의 利益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國民에게 優先權의 利益을 주는 國家의 國民에 限해서 優先權을 준다고 하는 相互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條約 또는 協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特許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認定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에 特許出願을 한 후 同一發明을 大韓民國에 特許出願을 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新規性 및 先願主義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外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出願한 날로 본다(特許法 第42條)」. 現在 優先權을 認定해 주는 國家는 美國, 스페인, 英國, 스위스, 캐나다 뿐이다. 그러므로 國內에 出願한 우리 國民이 出願한 날로부터 1年以内に 美國에 出願하면 優先權의 利益을 받을 수 있으나 日本과 같은 優先權에 관한 相互認定國이 아닌 나라는 優先權의 利益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優先權의 利益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日本에 出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權利能力이 없는 外國人에게 잘못 特許가 되었을 때에는 審判에 의하여 無効로 된다.

4.3 出願人 및 發明內容의 同一性

出願人의 同一性이란 第一出願國의 出願人과 第二出願國의 出願人사이에 法的關聯이 있는 것을 要한다는 뜻이다. 즉 第二國의 出願人은 第一國에 正規로 出願한 者이거나 그 權利를 正當히 承繼한 者이어야 한다. 그리고 發明內容의 同一性이란 第一國의 最初出願을 基本으로 한 第二國出願의 對象은 最初出願의 對象과 同一性이 있어야 한다. 이때 第二國出願이 第一國의 出願보다 그 特許請求範圍가 넓은 경우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 部分은 第一國出願과 實質적으로 一致하는 部分에 限定되며 그렇지 않은 部分은 優先權主張이 認定되지 않고 新規性 및 先願事實 등에 있어서 第二國의 出願日로 된다. 그리고 特許出願의 對象으로 되는 發明,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對象으로 되는 考案, 意匠登錄出願의 對象으로 되는 創作에 對해서도 各 國家의 法規에 의하여 그 定義가 꼭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셋 사이에는 相互變更하여 出願하는 것이 허락되고 있다. 그러나 商標는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과 相互의 變更出願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4.4 優先權主張의 節次

優先權은 第二國出願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定해진 利益이나, 第一國 및 第二國出願의 事實만으로는 이 利益을 받을 수 없다. 즉 第二國出願 때에 그 신청을 하고 一定期間內에 優先權證明書를 제출하여야만 그 利益을 받을 수가 있다.

1) 優先權의 申請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出願時에 最初의 出願年月日 및 그 國名을 記載한 書面을 제출하여 그 申請을 해야 한다.

2) 優先權證明書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出願日로부터 3個月以内に 最初에 出願한 國家의 認定이 있는 出願의 年月日, 出願된 發明의 內容을 記載한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提出해야 된다.

3) 優先期間

同盟國中 第一國의 出願에 의하여 發生한 優先權은 다른 同盟國에의 出願에서 自己發明의 新規性, 進歩性を 破壞하는 他人의 行爲에 대하

여 發明者(出願人)의 利益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한 것이다. 出願人이나 發明者의 利益을 保護한다고 해도 그것은 第三者의 利益을 完全히 無視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出願人이나 發明者의 利益과 第三者의 利益의 調和를 必할 必要가 있다. 그러기 위해 이는 優先權의 期間이 定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條約은 「優先期間은 特許 및 實用新案에 대해서는 12個月, 意匠 및 商標에 대해서는 6個月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期間內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優先權의 主張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5. 優先權의 效果

優先權을 主張한 出願은 第一國에서의 出願後 第二國에서의 出願前에 생긴 他人의 出願, 當該 意匠의 公表, 實施 또는 그 意匠에 관한 物品의 販賣 등에 의하여 不利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不利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拒絕되거나 無効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意味이다. 優先權을 主張한 出願에 관해서는 그 第二國에서의 出願後 第二國에서의 出願前에 생긴 行爲나 事實에 의하여 第三者에게 어떠한 權利도 發生되어서는 안된다. 例를 들면 韓國特許出願을 기본으로 하여 優先權期間內에 美國에 特許出願을 했을 때 그 期間內에 他人이 美國에 同一內容을 特許出願했는지라도 그에게 特許權이나 先使用權이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優先權을 主張한 出願에 대하여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을 發生시키기 위해서는 第一國에서의 出願時 그 出願에 관련된 發明의 內容을 알지 못하고 現在 第二國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事業設備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第一國에서의 出願과 第二國에서의 出願사이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을 發生시키지 않는다(特許法 第47條).

6. 複合優先

6.1 複合優先과 一部優先

前述한 바와 같이 優先權의 利益을 받기 위해

서는 第一國出願과 第二國出願間에 目的物에 대한 同一性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要件을 너무 엄격히 解釋하게 되면 모처럼의 優先權制度의 趣旨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同一性의 개념을 目的物 全体가 아주 同一한 것만을 요구치 않고, 第一國 및 第二國出願의 目的物을 部分으로 나누어 各各의 對應關係에서 同一한 것도 可能하게 하고 있다. 例를 들면 第二國出願의 目的物이 A部分과 B部分으로 되고 A部分은 第一國出願 X로부터 B部分에 대해서는 第一國出願 Y로부터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개의 出願에서 2以上の 優先權主張을 包含하는 것을 複合優先(multiple priority)의 出願이라 하고 반대로 第一國出願의 一部에 대해서만 優先權을 主張하는 것을 一部優先(部分優先)이라 한다. 複合優先의 出願에 있어서는 優先權主張의 基礎로 된 第一國出願의 數에 따라 2以上の 優先權主張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2以上の 第一國出願은 同一同盟國이거나 또는 다른 同盟國이더라도 상관없다. 또 2以上の 第一國出願은 同一日이거나 또는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이라도 관계없다. 그리고 出願人이 2以上の 優先權을 主張하는 것을 理由로 하여, 그 優先權을 否認하거나 또는 그 出願에 대하여 拒絕의 處分을 할 수 없다. 따라서 複合優先의 경우에는 優先權의 效果는 各部分에 대하여 생긴다. 즉 위의 例에서 A部分은 第一國의 出願X의 出願日이, B部分은 第一國出願Y의 出願日이 各各 基準으로 되어 先後願의 關係와 新規性이 審査되게 된다. 複合優先에 대하여 파리條約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어느 同盟國도 特許出願人이 2以上の 優先權(2以上の 國家의 出願을 基本으로 한 것도 포함)을 主張하는 것을 理由로 하여 當該優先權을 否認하거나 또는 當該特許出願에 대하여 拒絕의 處分을 할 수가 없다(條約 4條F項).

6.2 最初優先權과 最後優先權

併合出願으로서 複數出願을 할 경우 그 優先權主張의 기본이 된 特許들 중에서 제일 빠른 優先權을 最初優先權(Earliest Priority)이라 하

며 이때의 날짜를 最初優先權日(Earliest Priority Date)이라 부른다. 이 最初優先權日이 特許權者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發明들의 순서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색인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外國에 併合出願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優先權日을 제일 빠른 것으로 하여, 즉 最初優先權日을 기준으로 하여 公開가 18個月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併合出願制度는 우리 特許法에는 없고 日本에 있는 制度인데 이와 유사한 制度로서 우리 特許法에 關聯發明이 있다(特許法 第9條). 이 併合出願의 制度는 複數의 發明이라도 發明이 類似하고 一定의 要件을 만족하면 한개로 모아 特許出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特許出願人에게 便利한 制度이다. 그리고 複數出願番號中에서 제일 늦은 것은 對應關係를 決定할 때에 有効한 것으로 이것을 最後優先權(Latest Priority)이라 한다. 즉 同一한 最新의 技術的 內容을 包含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最初優先權日 및 最後優先權日 등이 직접 사용되는 예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7. 맺는말

近年에 들어 工業의 急速한 發展과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一般國民의 認識提高도 每年 國內의 出願이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즉 1961년에는 5,000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出願이 1977년에는 25,000건으로 增加되었으며 外國人의 出願比率는 繼續 增加되어 1977年 中에는 總出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 經濟의 急速한 成長과 發展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輕工業爲主에서 重化學工業中心으로의 産業構造 改編과 高度化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技術水準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이 問題이다. 따라서 重化學工業 育成에 따른 自体 技術開發을 促進함과 더불어 最新의 先進技術을 果敢히 導入·消化하고 土着化함으로써 보다 빠른 期間內에 先進技術에 接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技術開發을 效果的으로 遂行키 위해서는 工業所有權制度의 劃期的 發展

이 다른 어떠한 政策手段에 못지 않게 重要하며 또한 이 工業所有權制度에서 가장 必要한 因子中의 하나가 特許情報라 할 수 있으므로 이 特許情報의 積極的 活用과 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效率的인 特許情報管理 없이는 達成될 수 없다. 아울러 企業의 特許管理擔當者나 技術情報管理擔當者 그리고 研究所의 技術情報管理擔當者들의 特許情報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圓滑한 活用을 위하여 우리 機關 文獻士들의 特許情報와 優先權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바란다.

參 考 文 獻

1. 李欽澈：特許의 國際化動向과 우리나라에서의 特許現況, 情報管理研究 Vol. 12, No. 1, p. 1~6
2. 任命宇：Derwent社의 特許情報活動, 情報管理研究 Vol. 8, No. 2, p. 47~61
3. 播磨良承：パリ條約における基本原理と優先權, パテント Vol. 29, No. 12, p. 11~29
4. 谷山祥二：變動する外國特許制度の實態, 特許管理 Vol. 24, No. 10, p. 1073~1082
5. 李欽澈：特許制度의 國際化動向, 情報管理研究 Vol. 10, No. 4, p. 103~108
6. 霜越正夫：各國 優先權主張をめぐって, パテント Vol. 28, No. 3, p. 22~44
7. 玉井鐵夫：特許資料について, 情報管理 Vol. 11, No. 11, p. 593~596
8. 播磨良承：優先權主張とその本質, 發明 Vol. 71, No. 6, p. 36~39
9. 國際委員會：美國において外國の優先日以前の發明日を確定することについて, 特許管理 Vol. 27, No. 10, p. 1091~1095
10. 金守東：파리協約의 現況과 內容(上), 特協 Vol. 37, No. 3, p. 10~12
11. 金守東：파리協約의 現況과 內容(下), 特協 Vol. 37, No. 4, p. 17~44
12. 稻葉安養子：情報源としての特許とその調査法, 情報管理 Vol. 12, No. 1, p. 39~53
13. Derwent publications LTD, CPI & WPI Instruction Manuals.
14. 豐崎光衛：工業所有權法, p. 41~51
15. 李秀雄：新工業所有權法, p. 35~157
16. 光石土郎：特許法解説, p. 441~451